

#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학과 내규

제정 2020.08.31.

개정 2023.02.20.

개정 2024.06.27.

개정 2025.02.03.

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학과 대학원 과정(석사, 박사, 석박통합과정)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함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제반사항이며, 본교 학칙에 입각하여 학과 내규로 정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.

## 1. 학사운영 일반

가.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서울대학교 규정을 따른다.

나. 대학원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 학점 이상으로 한다.

- 1) 석사과정 24학점
- 2) 박사과정 36학점
- 3) 석박통합과정 60학점
- 4)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.

## 2. 교과목의 구성 및 내용

가. 교과목 이수 표준형태

- 1) 전공필수: M3294.000100 지능정보세미나 이수
- 2) 연구윤리필수: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윤리 정규교과목 1개 이상 이수 (2023학번 이후)
- 3) 전공선택: 전공선택 과목은 본 전공 개설교과목,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승인하는 학부과목(최대 6학점까지) 및 타전공, 타학과(부)의 대학원과정 개설교과목으로 한다. 타학과(부) 인정학점, 학부 전공과목 인정학점 한도는 교과과정 해설에 따른다.
- 4) 대학원논문연구: 석사과정 6학점, 박사과정 12학점, 석박통합과정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 단,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.

## 나. 과정별 이수기준

구분	전공필수	전공선택	연구윤리	대학원논문연구 <sup>1)</sup>	
				최대이수 학점	비고
석사	지능정보 세미나	전공개설 교과목 타전공, 타학부(과) 인정교과목	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윤리 정규교과목 1강좌(2023학번 이후)	6학점	한 학기 “1강좌”
박사				12학점	수강원칙
석박 통합				18학점	지도교수 승인 하에 한 학기 “2강좌” 가능

1) 한도초과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불인정. 단, 석사과정과 석박통합과정은 입학 후 첫 학기 및 지도교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수강 불가함.

- ※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(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중복이수가 되어 박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.
- ※ 전공선택 교과목 : 다른 대학(원) 및 타전공, 타학부(과)에서 동종계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※ 공통역량 교과목 : 공통역량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 한도는 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**타 학과(부) 전공학점**으로 인정한다.
- ※ 경과조치: 2020학년도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변경된 학생들의 기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.

## 3. 석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
### 가. 논문지도교수 선정

- 1) 석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다.
- 2) 논문지도교수 변경 후 1년 이내에 졸업할 수 없다. 단, 특수상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졸업할 수 있다.
- 3) 논문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1인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  - 가)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  - 나) 국내·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
  - 다) 타 학과(부)·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
  - 라)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나. 논문제출자격시험

- 1)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.
- 2)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한다. 이때, TEPS 298점(구 TEPS 551점) 이상, 또는 상응하는 TOEFL 성적을 합격으로 한다.
- 3)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4) 종합시험
  -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  -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.
  - 필답시험은 응시자가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승인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.
- 5) 종합시험에 있어서 필답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불합격된 시험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#### 다. 학위논문 신청자격

- 1) 석사는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,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2)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#### 라. 논문심사

- 1) 논문심사 당해 학기 중에 공개발표 형태의 구술고사와 함께 논문의 최종 심사를 실시한다.
- 2)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학원 학사위원회가 선정하며,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둔다.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#### 마.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

- 1) 합격점수 :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.
- 2) 논문의 합격 :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## 바. 학위논문제출 허용기간

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본부 규정에 따른다.

#### 4. 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
##### 가. 논문지도교수 선정

- 1) 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다.
- 2) 논문지도교수 변경 후 1년 이내에 졸업할 수 없다. 단, 특수상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졸업할 수 있다.
- 3) 논문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1인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  - 가)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  - 나) 국내·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
  - 다) 타 학과(부)·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
  - 라)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# 나. 논문제출자격시험

- 1)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.
- 2)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한다. 이때, new TEPS 298점 (old TEPS 551점)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성적을 합격으로 한다. 또한, 입학 시 인정받은 TEPS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본부 규정에 따른다.
- 3) 종합시험
  -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  -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박사 과정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. 단,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**학과 교수회의** 승인 하에 최대 2회의 재시험이 가능하다.
  - 종합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.
  - 필답시험은 응시자가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승인한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.
  - 구술시험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박사 논문계획서(Ph.D. thesis proposal)를 지능정보융합학과의 관련 교수가 참여하는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.
  - 종합시험에 있어서 필답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와 구술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불합격된 필답시험의 과목이나 구술시험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##### 다. 학위논문심사 신청자격

서울대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
- 1)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, 영어)에 합격한 자
- 2)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
- 3)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(과정 수료후 석사 4년, 박사 6년)을 경과하지 않은 자
- 4)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5) 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 제출하여 채택된 논문이 2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편 이상은 SCI(E), SSCI, AHCI 논문 또는 학과에서 정한 우수학술대회 논문이어야 한다 (심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게재 완료된 논문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. 다만, 1편에 한해 게재 예정(accepted for publication)인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).
- 6)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
- 7)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
- 8)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

라. 논문심사(논문요지 발표,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)

- 1) 논문요지 발표의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를 선택하여야 한다.
- 2) 최종심사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주제에 대한 논문 요지 발표를 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 2/3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.
- 3)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 중 논문요지 발표 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4)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의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학원 학사위원회가 선정한다.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 (교내 3인 이상, 교외 1인 이상 필수)으로 하며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 을 둔다. 다만 지도 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- 5) 예비심사는 학과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6)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해학기에 공개발표 형태의 구술고사와 함께 논문의 최종 심사를 실시 한다.

마.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

- 1) 합격점수: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.
- 2) 논문의 합격: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바. 학위수여의 결정 :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.

사. 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

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본부 규정에 따른다.

## 5. 석사·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가. 논문지도교수 선정

- 1)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다.
- 2) 논문지도교수 변경 후 1년 이내에 졸업할 수 없다. 단, 특수상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졸업할 수 있다.
- 3) 논문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1인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 할 수 있다.
  - 가)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  - 나) 국내·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
  - 다) 타 학과(부)·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
  - 라)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나. 논문제출자격시험

- 1)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.
- 2)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한다. 이때, new TEPS 298점 (old TEPS 551점)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성적을 합격으로 한다. 또한, 입학 시 인정받은 TEPS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본부 규정에 따른다.
- 3) 종합시험
  -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  -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박사 과정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. 단,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 승인 하에 최대 2회의 재시험이 가능하다.
  - 종합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.
  - 필답시험은 응시자가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승인한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.
  - 구술시험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박사 논문계획서(Ph.D. thesis proposal)를 지능정보융합학과의 관련 교수가 참여하는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.
  - 종합시험에 있어서 필답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와 구술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불합격된 필답시험의 과목이나 구술시험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### 다. 학위논문심사 신청자격

서울대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
- 1)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, 영어)에 합격한 자
- 2)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
- 3)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(과정 수료후 석사 4년, 박사 6년)을 경과하지 않은 자
- 4)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5) 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 제출하여 채택된 논문이 2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편 이상은 SCI(E), SSCI, AHCI 논문 또는 학과에서 정한 우수학술대회 논문이어야 한다. (심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계재 완료된 논문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. 다만, 1편에 한해 계재 예정(accepted for publication)인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).
- 6)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
- 7)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
- 8)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

라. 논문심사(논문요지 발표,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)

- 1) 논문요지 발표의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를 선택하여야 한다.
- 2) 최종심사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주제에 대한 논문 요지 발표를 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 2/3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.
- 3)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 중 논문요지 발표 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4)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의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학원 학사위원회가 선정한다.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 을 둔다.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- 5) 예비심사는 학과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6)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해학기에 공개발표 형태의 구술고사와 함께 논문의 최종 심사를 실시 한다.

마.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

- 1) 합격점수: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.
- 2) 논문의 합격: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바. 학위수여의 결정 : 박사학위 수여는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사. 석사학위취득: 박사학위를 취득할 자격에 미달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, 석사학위 수여의 요건을 만족하면,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·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: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석사·박사통합과정 포기원을 제출하고

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등의 석사학위 자격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.

- 박사학위 포기원 제출: 통합과정 수료 후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박사학위 포기원을 제출하고 석사학위 자격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.

아. 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

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본부 규정에 따른다.

자.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들은 박사과정 운영내규에 준하여 따른다.

부 칙 (2020.08.30.)

① 이 내규는 2020.09.01.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, 2020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학과 신설 전 소속 전공의 내규를 따를 수 있다.

부 칙 (2023.02.20.)

① 이 내규는 2023.02.20.부터 시행한다.

② 제2조 가항 연구윤리 필수 이수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 하며, 2022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이전 내규(2020.08.30.)를 따른다.

부 칙 (2024.06.27.)

① 이 내규는 2024.06.27.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 교과목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,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이라도 따를 수 있다.

③ (경과조치) 제3조 나항, 제4조 나항, 제5조 나항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전 입 학생이라도 따를 수 있다.

부 칙 (2025.2.3)

① 이 내규는 2025.2.3.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 교과목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, 2025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③ 타 학과(부) 전공수업의 인정범위 산정 시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학점의 1/2을 원칙 으로 하되,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논문연구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.